

의안번호	2205079
의 퇴 인	서지영 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계번호	24C46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책임)	(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u>교육감</u>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1항)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교육감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1항, 제5항) 의무규정 (제2항, 제3항, 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9조의2 (보호자 교육)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항) 교육부장관 및 <u>교육감</u> 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u>교육감</u> 은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 및 <u>교육감</u> 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u>교육감</u> 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u>교육감</u>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u>교육감</u> 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5조의2 (놀이터 설치)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교육감</u>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 시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교육감</u> 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u>교육감</u> 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교육감</u>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재량규정 (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u>교육감</u> 에게 신고한 경우	의무규정
11	안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항) <u>교육감</u> 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u>교육감</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u>교육감</u> 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의무규정
13	안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제1항) <u>교육감</u> 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u>교육감</u> 이 위촉한다. (제4항) <u>교육감</u> 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항)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u>교육감</u>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항)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u>교육감</u> 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제4항, 제8항) 재량규정 (제3항, 제6항) 의무규정
14	안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항) 교육부장관 및 <u>교육감</u> 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5	안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항) <u>교육감</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6	안 제34조의5 (조사·질문)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u>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u>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u>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u>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8	안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1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교육감</u>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u>교육감</u>은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19	안 제41조	교육부장관 및 <u>교육감</u> 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량규정

	(지도와 명령)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0	안 제42조 (보고와 검사)	(제3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1	안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3항) 교육부장관 및 <u>교육감</u> 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22	안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u>교육감</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3	안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재량규정
24	안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재량규정
25	안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명령)	<u>교육감</u> 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재량규정
26	안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제1항) <u>교육감</u>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항) <u>교육감</u>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3항) <u>교육감</u>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제4항) <u>교육감</u>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u>교육감</u>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	(제1항, 제2항) 재량규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의무규정

		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7	안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교육감은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항) 교육감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재량규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의무규정
28	안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 재량규정 (제3항) 의무규정
29	안 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2항)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의무규정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30	안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및 <u>교육감</u> 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1	안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u>교육감</u>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제6항) 재량규정 (제4항) 의무규정
32	안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3	안 제5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교육감</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량규정
34	안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항)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규정
35	안 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1항) <u>교육감</u> 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36	안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1항) <u>교육감</u> 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37	안 제56조 (과태료)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u>교육감</u> 이 부과·징수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책임)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임¹⁾
- 교육부는 '22년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하고, '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보육사무를 이관받음
 - 개정안은 해당 실행 계획(안)에 따라 사무수행 등의 주체를 시·도지사(및 시·군·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거나 병기하여²⁾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임
 - － (사무수행 또는 책임 주체 변경) 안 제4조제3항(어린이집 확보),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안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안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안 제15조의2(놀이터의 설치), 안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안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안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안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안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4항(시간제보육 서비스 기관 지정 및 취소), 안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자·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안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안 제4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아동학대의심 조사·검사 등), 안 제49조의2제1항(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안 제51조의3(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 －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과 병기)³⁾ 안 제7조(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안 제11조(보육계획), 안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안 제34조의5(조사·질문), 안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안 제41조(지도와 명령), 안 제42조(보고와 검사), 안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안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안 제45조제1항(어린이집의 폐쇄 등), 안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안 제45조의3(행정

1)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2) 안 제9조의2(보호자교육)의 경우 기존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제3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

3) 교육부장관과 병기된 경우를 포함함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안 제49조(청문), 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6항(시정 권고 등), 안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안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안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등의 어린이집), 안 제56조(과태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소요 재원이 증가할지 여부와 그 증가 규모,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가 소요 예산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보육사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의 재원은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안번호 제2205080호)에서 규정함
 - 해당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 경비와 자체 편성 경비 및 관련 인건비 등을 교육청으로 진출하는 규정을 신설⁴⁾
 - 이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중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됨⁵⁾
 - 다만, '24년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24년) 말 확정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80호)

제15조(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시·도 및 시·군·구는 이 법 공포 당시(법률 제○○○○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영유아 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같은 항에 따른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포 당시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유보통합 실행계획(안)」(2024.06.27. 교육부) 참조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안번호 제2205080호)에 따라 해당 개정안 공포 당시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 지역의 영유아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예정⁶⁾임
- 다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사무주체의 일원화와 동시에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하는 것이므로, 해당 재원만으로 이를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움⁷⁾⁸⁾
-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⁹⁾를 신설하여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할 예정이며,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2024년) 말 확정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임¹⁰⁾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육사무의 주체가 된 교육청이 부담하게될 재정지출이 증가할지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6)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육부 추산(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취합 기준) 국고대응사업비 30,318억원과 특수보육시책사업비 18,838억원 등 총 4.6조원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

7)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육사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관되더라도, 실제 인력 이체과정에 있어 전입·전출 희망자 불일치 등으로 인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실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총 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8)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시행 이후 교육부 영유아 관련 인력에 대해 ‘교육부 내 재배치 11명, 보건복지부 이체 33명’ 외에도 ‘순증 17명’이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배치 과정에서도 인력 순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9) 교육부는 추진과정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법률명(2026년 시행 목표)을 변경할 계획(자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10)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2024.06.27. 교육부) 참조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